

농 · 축협 2001년까지 통합

- 김성훈 장관 “농 · 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 홍 보 부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 · 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확정 발표하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조합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한데 이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농 · 축 · 임 · 삼협 등 4개 협동조합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2001년까지 농 · 축협중앙회 통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축산농가를 포함해 축산관련 기관 · 단체 인사들과 축협노조는 협동조합 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농 · 축협중앙회 통합에 대해서는 전문화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통합이 실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이날 발표한 농 · 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주 내용이다...〈편집자 주〉

1. 협동조합 개혁방안

가. 회원조합(일선조합) 개혁방안

〈기 본 방 향〉

-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생산자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일선조합중심의 육성정책을 대폭 보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
-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대폭 확대 · 보강하고, 신용사업은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① 농산물 유통개혁 관련예산을 농 · 축협의 일선조합에 집중 지원하여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적극 육성

○유통개혁 관련예산(5,477억원)과 농안기금(7,922억원) · 축발기금(1,309억원)의 유통자금을 일선조합에 집중지원

○회원조합이 하고 있는 기존의 상호금융과 지도 · 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조합으로 육성

② 조합장선거 제도를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농협법 제46조, 축협법 41조개정)

○각 조합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6~14명)에서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인사 2~3명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장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조합장 출마자격을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부전문가로 영입될 수 있도록 개방

③ 조합장 권한과 책임 : ①조합장이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그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②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 병행,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개정(농협법 제54조, 축협법 제48조개정)

④ 일선조합에 대한 중앙회와 농림부의 지도 ·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한 자체감사제도를 보완

○중앙회의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 정례화(2년에 1회이상)하고, 농림부도 일선조합에 대한 표본감사를 정례화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은 책임을 묻고 통폐합 명령 등 조치(농협법 제172조, 축협법 제142조 개정)

-경영평가결과 경제사업 실적이 계속 부진한 일선조합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무를 중지시키거나 통합

○현재 비상임감사만 두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 도입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예 : 예수금 1,000억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 규모 200억원)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자체감사기능을 대폭 강화(농협법 제46조, 축협법 제41조 개정)

⑤ 조합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수당중심의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개선

○유급휴가, 지도수당, 복리후생비등 20여종의 수당을 정비하여 급여체계를 단순화(농·축협직원 급여규정 개정)

⑥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적정경제단위로 통폐합

○현재 읍면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 1,203개소를 1군1조합 원칙으로 300개소 이내로 통합하되 최단기내에 완료

-도·농 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 조합으로 통합

※일선조합을 시·군단위로 통합하는 경우 기존의 중앙회 시군지부를 지점화하고 금융사업 이외의 기능은 통합조합에 이양

○축협의 일선조합은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광역화하여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현재 202개소에서 100개소 이내로 통합하되 최단기간내에 완료

○임협 일선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와 공동실사를 거쳐 부실조

합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 또는 농협에 흡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존치보강

○일선조합의 통합촉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고, 통합조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강화

-축산업협동조합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합병촉진 근거 신설

-농업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1군1조합으로

-경영부실조합, 조합원 과소조합 등에 대한 합병권고 불이행시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 도입

-합병촉진을 위해 부실채권상각, 시설 재배치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조합당 5억원)은 중앙회의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자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시는 재정에서 지원

나. 중앙회 개혁방안

<기 본 방 향>

○협동조합중앙회의 개혁은 농업인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개편

-유통·지도사업 중심으로 육성 보강해 나가고, 신용사업은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효율화·전문화 방향으로 개선

①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4개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폭 개편

○4개 협동조합중에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임업 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일선임협은 산림조합(임업 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 임업인의 권익신장

-일선 인삼협은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인삼협의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조합으로 적극 육성, 통합중앙회에 인삼협 조합원의 대표권을 보강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은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하여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시킨 후 2001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추진

②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슬림화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개편

○중앙회와 회원조합 공동출자 회사의 경영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중앙회는 동사업체의 경영지도만 담당

③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농협법 제148조, 축협법 제118조 개정)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만 갖고 지도·교육·관리 업무와 농정활동업무를 담당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고,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Outsourcing이 가능하도록 개선·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

○경제 및 신용사업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업무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하는 등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임금구조를 단순화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농협법 제161조, 축협법 제131조 개정)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비신용 사업부문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신용사업의 경우 농·축협의 특수성이 반영된 BIS비율 산출기준을 금감원과 협의제정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경영 유도

④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으로 개편

○전국조합장 전체가 참여하여 선출하는 현행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전국대의원과 조합장중에서 투표 2~3일전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농협법 제149조, 축협법 제119조 개정)

⑤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과 적자 점포등의 정리에 따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강력 추진

○농협중앙회는 경우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지역본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와 기능이 중복되는 신용사업본부 4개소(105명)를 연내에 폐쇄

-농협중앙회 직영의 가공제품 서울물류센터, 농특산 가공품 전시판매장은 (주)농협유통에 통합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을 추진, 매각대금은 일선조합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

○회원조합수가 적어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낮은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149명)는 연내에 폐쇄하여 건물 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투입

○대도시에 신규점포 설치를 억제, 적자 부실 점포를 통폐합

-도시지역 일선회원조합 점포도 연내에 정리

⑥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하고 체계화

○신용업무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써 신용업무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농협법 부칙 제16조 개정)

-농림부는 포괄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과를 신설

○농림부, 금감원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역할

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동감독체제를 강화

2. 부채대책 추가 보완대책 추진

① 상호금융금리를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추가로 2%p인하(14.5% → 12%대)

○협동조합이 결의발표한 금리인하(2%p)를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② 부채대책 추가 보완대책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3월부터 농업생산 목적의 고리의 상호금융자금등 대체자금으로 지원

○고금리 운영자금으로 구조적인 자금 압박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선의의 농가를 선별하여 지원

③ 지난해 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후

일시상환 부담완화 조치와 정책자금 금리의 IMF 이전 수준인 5%로 추가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3. 추진일정

□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입법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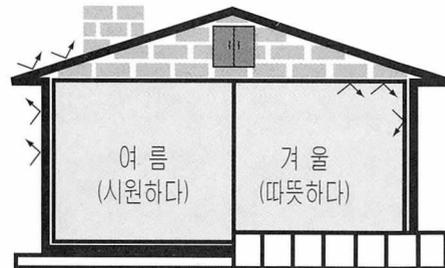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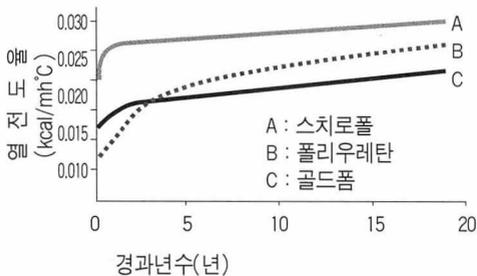
※정비대상 관련법률

-개정대상 : 농협법, 축협법, 임협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추진에 관한 법률

-폐지대상 : 인삼협법 **양동**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독일형 상압식 압출보드 단열재

열전도율의 경시변화



골드폼을 사용했을때의 효과

세계로 수출하는 골드폼은

최고의 단열성, 빠르고 편리한 시공성으로 축산농가에 인기가 좋습니다.



자매품

갈바룸, 조립식판넬
스티로폼



서울이피에스산업

전화 (0331)225-4980(代)
팩스 (0331)238-0423
휴대폰 017-360-8899